

Incorporating an association

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소규모 비영리 지역사회 그룹입니다. 법인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는 협회의 유형:

- 스포츠 그룹
- 예술 및 공예 그룹
- 사교 그룹
- 소수민족 및 문화 그룹
- 연금수령자 협회
- 음악 단체
- 환경 그룹.

법인설립 단계는 해당 그룹이 막 형성되고 있는지 또는 이미 비법인 단체나 협동조합 또는 회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운영하거나 회원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법인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반드시 최소한 5명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 협회의 법인설립

협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를 밝으십시오.

1. 이름 선택

제안된 이름이 협회의 목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NSW Fair Trading은 제안된 이름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안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름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면, 대부분의 경우,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Australian Security and Investments Commission (호주 증권 및 투자 위원회) 웹사이트 connectonline.asic.gov.au에 있는 Organisation and Business Names (기관 및 비즈니스 이름) 검색 도구를 통해 검색하면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름과 비슷한 지 여부를 신청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NSW 사단법인 온라인 명부를 통해 무료로 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제안된 이름이 어느 사단법인에 의해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는 NSW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에 관하여, 기관의 법인명과 번호, 법인설립 날짜 및 등록 상태를 포함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록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름을 예약할 의향이라면, Fair Trading 웹사이트의 협회 양식 페이지에서 이름 예약 신청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목적 및 정관 확립

모든 사단법인에는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협회와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회원들 사이의 계약입니다. Fair Trading에 있는 모델 정관을 사용하거나 자체적인 정관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정관을 개발하는 경우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협회 법인설립 법)* (이하 '법률')의 별표 10에 명시된 17가지 내용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3. 사단법인 등록 신청서 승인

등록 신청에 포함되는 사항:

- 제안된 협회 이름
- 협회의 목적에 대한 진술
- 협회의 제안된 정관 사본, 또는 협회의 제안된 정관이 모델 정관을 수정 없이 채택한다는 진술
- 협회의 최초 공무 담당관.

5명 이상이 협회 등록을 제안하는 경우, 그들 각자가 협회의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최초 공무 담당관을 승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비법인 단체인 경우, 해당 비법인 단체의 회원들이 통과시킨 특별 결의사항을 통해 신청서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특별 결의사항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사단법인 등록 신청

협회의 최초 공무 담당관은 규정된 요금과 함께 사단법인 등록 신청서 (양식 A2)를 Fair Trading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주소: Registry Services, PO Box 22, Bathurst NSW 2795
- 작성한 신용카드 세부사항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주소: registrylodgements@finance.nsw.gov.au
- Service NSW Centre에 직접 제출.

기존의 협동조합 또는 회사를 전환하기

NSW에 등록된 기존의 협동조합, 연방의 *Corporations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ct 2006* (법인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 법 2006)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회사 (등록 가능한 법인은 사단법인이 되기 위하여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법인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밟으십시오.

1. 이름 선택

위에 언급된 (신규 협회의 법인 설립) 제 1 단계를 따르십시오.

2. 목적 및 정관 확립

모든 사단법인에는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협회와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회원들 사이의 계약입니다. Fair Trading에 있는 모델 정관을 사용하거나 자체적인 정관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정관을 개발하는 경우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협회 법인설립 법)의* 별표 1에 명시된 17가지 내용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3. 사단법인 등록 신청서 승인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by registrable corporation (등록 가능한 법인에 의한 사단법인 등록 신청서) (양식 A4)는 해당 법인의 회원들이 통과시킨 특별 결의사항을 통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 가능한 법인은 사단법인으로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근거 법률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 사단법인 등록 신청

협회의 최초 공무 담당관은 *Fair Trading에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by registrable corporation* (등록 가능한 법인에 의한 사단법인 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A4).

신청서는:

- 제안된 협회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협회의 목적에 대한 진술을 포함합니다
- 협회의 제안된 정관 사본, 또는 협회가 모델 정관을 수정 없이 채택한다는 진술을 포함합니다
- 협회의 최초 공무 담당관의 신원을 밝힙니다
- 신청서를 승인하는 특별 결의사항의 사본을 포함합니다

- 신청 기관이 관련된 전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신청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규제 당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합니다
- 등록 가능한 법인의 신청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 및 지출 견적을 포함합니다
- 등록 가능한 법인의 신청 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사본을 포함합니다
- 규정된 요금을 포함합니다.

협회의 법인설립이 거부될 수 있는가?

Fair Trading이 협회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취소 신청을 하도록 협회를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Fair Trading은 법률의 목적 및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협회가 등록이 되어서는 안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협회 정관의 규정이 법률에 반하는 경우
- 협회의 목적
- 협회 활동의 성격 또는 규모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지출에서 \$2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거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협회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 기타 충분해 보이는 이유.

기타 고려사항

세금 공제

협회가 소득세 공제 및 기타 세금 할인을 받고자 한다면, 호주 국세청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조항들을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금 공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ustralian Taxation Office 웹사이트 www.ato.gov.au를 방문하십시오.

호주 사업자 번호 (ABN)

법률이 사단법인의 ABN 보유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목적으로 사단법인이 ABN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ABN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ustralian Business Register (호주 비즈니스 명부) 웹사이트 abr.gov.au를 방문하십시오.

협회의 법인설립 비용으로 얼마가 드는가?

현재의 요금에 대한 정보는 Fair Trading 웹사이트의 협회 요금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Registry Services (등록 서비스)에 1800 502 042 또는 02 6333 1400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Incorporating an association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본 안내자료의 주제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Fair Trading 웹사이트 www.fairtrading.nsw.gov.au 를 방문하십시오.

Registry Services (등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PO Box 22

Bathurst NSW 2795

전화: 02 6333 1400

무료 전화: 1800 502 042

이메일: registryinquiries@finance.nsw.gov.au

www.fairtrading.nsw.gov.au
Fair Trading enquiries 13 32 20
TTY 1300 723 404
언어 지원 13 14 50

이 자료는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토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적절한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 State of New South Wales (NSW Fair Trading), 2017

NSW Fair Trading을 통해 집행하는 The State of New South Wales는 공적으로 재정을 보조하는 정보의 재사용을 지원 및 권장합니다. 이 발행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licence 하에 인가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fairtrading.nsw.gov.au/ftw/Copyright.page를 방문하십시오.